

자기에 대한 의무의 성립 가능성

강은아*

칸트 『윤리형이상학』의 ‘면제 반론’을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은 자기에 대한 의무가 개념적으로 자기-모순이라는 ‘면제 반론’(release objection)을 중심으로 자기에 대한 의무의 성립 가능성을 논한다. 예비적으로 자기에 대한 의무가 타인에 대한 의무와 함께 비파생적인 상위 종류의 도덕적 의무라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먼저, 내가 나 자신을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면제 반론의 전제가 충분히 정당화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면제 반론이 성공적이지 못함을 보인다. 다음으로, 그럼에도 면제 반론이 칸트의 의무 성립 논의에 대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함을 지적한다. 의무 부과자로서의 자기와 의무 주체로서의 자기 지위를 구분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의무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칸트적 해결책은 의무 부과자의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할 부담을 지며, 자율성 논제와의 이론적 긴장을 해명할 부담도 갖는다. 결국, 본 논문은 면제 반론이 칸트의 의무 성립 논의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의무 개념은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는 반면 의무의 성립 조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탐구를 요구함을 드러낸다.

주제어 의무, 자기에 대한 의무, 면제 반론, 자율성 테제, 의무 부과자, 의무 주체

1. 자기에 대한 의무를 둘러싼 논쟁

『윤리형이상학 정초』¹에서 칸트는 도덕적 의무를 완전한 의무/불완전한 의무,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의무/타인에 대한 의무로 구분한다. 그는 이 구분이 “의무들의 통상적인 분류에 따른”(IV421) 것으로,² “이 구분은 (나의 실례들에 순서를 주기 위한) 단지 임의적인 것”(IV421주)이며 진정한 구분이라 할 만한 것은 “장차의 윤리형이상학을 위해 전적으로 미뤄두”겠다고 말한다.³ 그리고 칸트는 약 12년 뒤에 『윤리형이상학』에서 정식으로 자기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를 덕의무의 상위 구분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의무구분을 고수할 뿐만 아니라 윤리형이상학에 적극적으로 통합시킨다. 『윤리형이상학』의 「윤리학적 요소론」은 「자기에 대한 의무들 일반에 대하여」와 「타인에 대한 덕의무들에 대하여」라는 두 부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은 다시 완전한/불완전한 의무로 나뉜다. 이처럼 칸트의 실천철학에서 자기에 대한 의무는 타인에 대한 의무와 함께 덕의무의 두 축이 되는 구분이다.

반면, 몇몇 철학자들은 자기에 대한 의무가 진정한 도덕적 의무일 수

-
- 1 칸트 저작의 인용 시 저서 번호 및 페이지 표시는 독일 베를린 학술원판 칸트 전집(Kant's *gesammelte Schriften*)을 따른다. 『윤리형이상학 정초』는 『정초』로 줄여서 표기하며, 『윤리형이상학』은 MS로 표기한다. 칸트 글을 인용 시에 독일 베를린 학술원판 칸트 전집의 페이지만을 표기한다.
 - 2 오자와에 따르면 칸트 당대의 철학자인 바움가르텐은 의무를 신에 대한 의무와 자기에 대한 의무, 타인에 대한 의무라는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칸트는 이를 신에 대한 의무를 자기에 대한 의무로 통합시키고 자기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만을 구분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오자와는 이것을 칸트의 의무 구분이 당대의 구분을 관습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칸트 자신의 해석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Osawa (2018), “General Conception of Duties Towards Oneself in Baumgarten and Kant”, *Natur und Freiheit: Akten des XII. Internationalen Kant-Kongresses* (Ed. by Violetta L. Waibel, Margit Ruffing and David Wagner), De Gruyter, pp. 2013–2020.
 - 3 칸트는 완전한/불완전한 의무를 각각 “경향성의 이익을 위한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의무”와 그렇지 않은 의무라고 설명하지만, 자기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붙이지 않는다.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기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도덕은 본질적으로 타인-고려적이어서 자기에 대한 의무는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도덕적 의무는 오직 타인에 대해서만 질 수 있다. 자기-고려적인 의무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타인에 대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단이 되는 파생적 의무이지 그 자체로서 성립하는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의무를 권리와 짝을 이루는 개념이라고 보는 계약론적 관점에서 주로 취해지며,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공리주의자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밀은 소위 자기에 대한 의무의 위반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의무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뿐이라고 말한다.⁵ 이 입장은 자기에 대한 의무를 타인에 대한 의무의 수단으로만 인정하므로, 자기에 대한 의무가 그 자체로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두 번째는 소위 자기에 대한 의무가 진정한 의무라기보다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자신의 장기적인 이득이나 행복의 추구는 종종 의무의 언어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이는 그러한 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거나 영리하지 않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싶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커스 싱어는 자기에 대한 의무를 암시하는 표현들이 “의무의 언어로 가장한 자기-이득에의 호소”⁶라고 주장

4 칸트는 자기-고려적 의무와 자기에 대한 의무 개념, 그리고 타인-고려적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윤리형이상학』에서 칸트는 자기에 대한 의무에 다른 존재자들에 대한 의무가 포함되는 것을 반성 개념들의 모호성으로 돌리면서, “인간은 다른 존재자를 고려한(in Ansehung) 자기의 의무를 이들 존재자에 대한(gegen) 의무로 혼동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로 오도된 것이다”라고 말한다(MS VI443).

5 존 스튜어트 밀은 자기에 대한 의무가 타인에 대한 의무에서 파생된 의무이며, 타인에 대한 의무를 위반할 때에만 자기에 대한 의무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존 스튜어트 밀(2018), 박문재 역, 『자유론』, 서울: 현대지성, 4장을 참조하라.

6 왜냐하면 그렇게 한 결심을 지키지 않더라도 그 위반으로 인해 어떠한 강제나 제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Singer (1959), “On duties to oneself”, *Ethics* 69(3), p. 203.

한다.⁷

세 번째는 자기에 대한 의무가 개념상으로 자기-모순이어서 아예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논증은 칸트 자신도 『윤리형이상학』에서 제출하였고 이후에는 마커스 싱어가 일명 ‘면제 반론’(release objection)으로써 제기하였다. 이 입장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있어 의무의 책무성은 자기 모순이어서 개념상 성립될 수 없다.

자기에 대한 의무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치명적인 반론은 세 번째일 것이다. 이 반론은 자기에 대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의무 개념의 성립 가능성 자체를 문제시하므로, 반론이 성공한다면 자기에 대한 의무는 개념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에 대한 의무가 포함하는 내용이 무엇이든, 자기에 대한 의무는 포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 나는 먼저 면제 반론을 검토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의무의 성립 가능성을 논할 것이다. 이 검토를 통해 나는 면제 반론이 자기에 대한 의무 개념의 자기 모순성을 보이는 데에 실패한다는 중간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면제 반론이 칸트 실천철학에서 의무 성립의 구조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던진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특히 면제 반론은 의무 성립에서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던, 의무 부과자와 의무 주체의 의무 성립에서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나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출된 두 가지 해석을 살펴보고, 어느 쪽의 해석도 충분치 않음을 보일 것이다.

7 버나드 윌리엄스는 이러한 표현이 의무의 요구에 맞서서 행위자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 추구나 자기 욕망을 방어 혹은 “세탁”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 도덕적 의무는 다른 모든 행위에 우선하여 수행될 것을 요구하므로, 행위자는 자신의 욕망을 의무의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욕구 추구를 방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Williams (1985), *Ethics and the Limits of Philosophy*, London: Routledge, p. 50.

2. 도덕적 의무로서의 자기에 대한 의무

면제 반론을 따져보기에 앞서 자기에 대한 의무 개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자기에 대한 의무를 부정하는 세 입장 중 앞의 두 가지에 대한 칸트 측의 대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 성립을 문제 삼는 자기에 대한 의무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자기에 대한 의무를 부정하는 첫 번째 입장(모든 의무는 타인 고려적이다)과 두 번째 입장(자기에 대한 의무는 자기 행복 추구를 위장한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은 도덕적 의무가 무엇인가를 둘러싼 칸트적 입장과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드러낸다.⁸ 그래서 두 가지의 충돌하는 입장 중 한쪽의 우위를 주장하거나 입증하기보다는 각 입장이 갖는 관점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고 이로써 칸트가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칸트가 자기에 대한 의무를 어떤 관점에 입각하여 이해하였고, 왜 이러한 의무 개념이 필요하다고 여겼는가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마커스 싱어는 자기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말이 자신의 이득을 잘 돌보라는 조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물론 '자기에 대한 의무'에 그러한 용법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시하는 자기에 대한 의무는 **도덕적** 책무로서,⁹ 우리의 물음은 도덕적 책무로서의 자기에 대한 의무가 성립 가능한가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도덕적 의무라는 것의 정확

8 이 차이를 거칠게나마 지적하자면, 반론자들은 도덕적 의무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사회적인 것으로 보지만, 칸트는 인간 자율성의 표현으로 본다.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 도덕적 의무는 설령 내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홀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로빈슨 크루소에게도 유효한 것이다. 칸트는 이를 의무를 권리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는 타율적 윤리관과 구별한다.

9 여기서 나는 의무와 책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것이지만 두 개념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책무는 의무가 갖는 특성, 특히 의무의 강제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나는 주로 의무가 갖는 강제성, 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할 때 책무라는 표현을 쓸 것이다. 다른 편으로, 의무는 물론 책무성을 포함하지만, 개별 의무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거짓말하지 않을 의무, 자살하지 않을 의무 등이 그러한 표현에 해당된다.

한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 점이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어떤 행동이 **도덕적 의무**라는 것은 그 의무 수행을 다른 행동의 수행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적 행위들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특히 도덕적 의무인 행위와 단지 내가 욕구하는 행위가 후보일 때, 도덕적 의무는 그 자신의 우선적 수행을 당위로써 요구한다.

이러한 생각은 자기에 대한 의무가 위장된 자기 행복의 추구라는 비판이 과녁을 벗어난 것임을 시사한다. 자기 욕구의 추구는 사실상 도덕적 의무가 아니므로, 선택의 상황에서 그러한 위장된 자기 행복의 추구는 우선적 수행이 당위로서 요구될 수 없다. 자기 욕구의 추구가 단순히 표현을 바꾼다고 해서 도덕적 의무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자기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칸트의 주장은 다른 욕구 추구 행위보다 우선시될 것이 요구되는 그러한 자기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만약 자기에 대한 의무가 자기 이득의 추구의 위장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것은 진정한 도덕적 의무는 아닐 것이고, 다른 행위에 앞서 우선시되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둘째, 어떤 행동이 도덕적 의무라는 것은 그 행동이 그 **자체로서** 수행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의무 행위는 타인이나 자기 행복을 이룰 수단에 그칠 수는 없다. 칸트는 자기에 대한 의무의 한 예로 자신의 신체적, 지적 능력을 계발할 의무를 꼽는데, 이것이 도덕적 의무라는 것은 그러한 계발 행위가 단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요구되는 것임을 함축한다. 그러한 의무의 다른 사례로 칸트는 자살하지 않을 의무와 “고의적인 비진리”¹⁰를 범하지 않을 의무를 드는데, 이는 자살이 단지 나와 친밀한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거짓말이 이를 듣는 타인의 인간성을 격하시키기 때문이라는, 타인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금지되는 것이 아님을 함축한다.¹¹ 만약 이러한 의무들이 단지 타인의 행복 추구 의무의 방편으로서 부과될 뿐이라면 자기에 대한 의무는 타인에 대한 의무와 더불어 의무 구분의 두 축을 이루는 구분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¹²

그러므로 칸트가 말하는 자기에 대한 의무는 비수단적이고 비과생적인 도덕적 의무이다. 즉, 자기에 대한 의무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다른 행위들에 앞서 우선적 수행을 요구하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의무와는 독립적으로 그 자체로서 성립하는 의무이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의미의 자기에 대한 의무가 정말로 가능한가를 묻는 것이다.

3. 자기에 대한 의무의 구조

면제 반론에 따르면 자기에 대한 의무는 개념적으로 자기-모순이므로 우리는 자기에 대한 의무를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반론자들은 자기에 대한 의무의 어디에서 모순을 발견하는 것일까? 이를 밝히기 전에 먼저 자기에 대한 의무가 성립하는 구조부터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구조에 있어 핵심은 의무의 책무성을 성립시키는, 책무를 지는 쪽과 책무를 부과하는 쪽이 맺는 관계에 있다. 나는 3장에서 자기에 대한 의무가 성립하는 구조를 타인에 대한 의무의 그것과의 비교를 통해 그려볼 것이고, 4장에서는 면제

11 칸트는 거짓말을 『정초』에서는 타인에 대한 의무로 분류하나, 『윤리형이상학』에서는 자기에 대한 의무로 분류한다. MS, VI429 참조.

12 이 점에서 자기에 대한 의무에 대한 존 스튜어트 밀, 버나드 윌리엄스와 칸트의 평가가 결정적으로 갈라진다고 볼 수 있다. 칸트에게 있어 자기에 대한 의무는 그 준수가 설령 자기 행복을 해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로서, 자기 행복의 방편이 아니다. 직관적으로 분명한 예가 비굴함이다. 칸트는 비굴해짐으로써 큰 이득이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비굴하지 않기 위해 자기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에 대한 도덕적 의무라고 말한다.

반론의 두 가지 버전을 제시하고 예비적으로 검토하겠다.

칸트가 자기에 대한 의무의 성립 문제를 주로 논하는 『윤리형이상학』의 해당 부분을 살펴보자.¹³

의무지우는 내가 **의무지워진** 나와 한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는 자기 모순적인 개념이다. 왜냐하면 의무 개념 안에는 (내가 **구속된다**)는 수동적인 강요의 개념이 함유되어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의무라면, 나는 나 자신을 **구속하는** 자로, 그러니까 능동적인 강요 중에 있는 자로 표상한다. (내가, 바로 동일한 주체가, 책무지우는 자이다.) (MS, VI417, 강조는 칸트)

칸트는 일반적으로 의무 개념에는 “수동적 강요의 개념”이 포함되며, 따라서 타인에 대한 의무와 자기에 대한 의무 모두에 그러한 강요 개념이 들어있다고 말한다. 이때 자기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의 구분은 “의무지우는” 자, 즉 강요를 부과하는 자의 차이에 의거한다. 의무지우는 자가 **자기**라면 그것은 자기에 대한 의무이고, 의무지우는 자가 **타인**이면 타인에 대한 의무라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의무에 있어 “나는 나 자신을 구속하는 자로, 그러니까 능동적인 강요 중에 있는 자로 표상한다.”¹⁴

이제 의무 일반이 성립되는 구조를 그려보자. 모든 의무에는 의무를 지는 쪽인 **의무 주체**와 더불어 의무를 지우는 쪽인 **의무 부과자**가 있다.¹⁵ 의무

13 본고에서 인용된 칸트 원문의 한글 번역은 백중현의 번역본을 기본으로 필자가 약간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14 의무가 강제라는 논의는 『정초』에서 충분히 논해졌던 것이지만, 강제를 부과하는 쪽과 부과받는 쪽의 역할 분담에 의해 의무가 성립한다는 논의는 『윤리형이상학』에 와서 칸트가 새로이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후자의 논의는 의무의 성립을 관계적으로 보는 칸트의 심화된 이해를 드러내는 것으로, 의무에 있어 새롭고도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15 사실, 의무 부과자와 의무 주체와 더불어 의무 주체의 의무 수행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수혜자도 의무 발생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한다. 여기서 의무 부과자와 수혜자는 일치하기도

는 의무 부과자(의무를 부과하는 자)가 의무 주체(의무는 지는 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성립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 구분은 비판기 초기의 저작인 『정초』에는 없는 것으로, 『윤리형이상학』에 와서 추가된 것이다. 의무 부과자를 A, 의무 주체를 B라고 하면, A는 B에게 의무를 부과하며 B는 A에게 의무를 진다. 모든 의무는 **A에 대해 B가 지는 의무**로서, B는 A에게 의무를 빚지고 있고 A는 B에게 의무 수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타인에 대한 의무와 자기에 대한 의무 각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타인에 대한 의무의 경우, 타인은 나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나는 그 타인에게 의무를 빚진다. 자기에 대한 의무의 경우, 나는 나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나는 나에게 의무를 빚진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의무는 타인에 대해 자기가 지는 의무이고, 자기에 대한 의무는 **자기에 대해 자기가 지는 의무**이다. 요컨대, 타인에 대한 의무는 자기가 타인에 대해 자기가 지는 의무를 줄인 표현이고, 자기에 대한 의무는 자기에 대해 자기가 지는 의무를 줄인 표현이다.

4. 면제 반론

4.1. 면제 반론의 두 버전

이제 면제 반론을 볼 것인데 나는 먼저 칸트가 제출한 버전을 보고, 싱어의 버전을 살펴보겠다.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의무 부과자는 문제의 의무 수행에서 아무런 손해나 이득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 위상은 역할로써 구분된다. 예를 들어 죽은 친구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친구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의무 주체, 즉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있어 의무 부과자는 죽은 친구이지만 그 수혜자는 친구의 자녀이다. 이처럼 의무 주체와 의무 부과자, 수혜자는 서로 구별되는 지위로써 상호적으로 의무를 성립시킨다.

사람들은 이 모순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밝혀낼 수 있다. 즉 책무지우는 자(책무의 부과자)가 책무지워진 자(책무 주체)의 책무(책무의 항)를 언제나 해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양자가 동일한 주체일 때에는) 그는 그가 자신에게 부과한 의무에 전혀 구속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이것은 하나의 모순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MS, VI417)

여기서 칸트는 반론자의 입장에 서서, 의무 부과자가 의무 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면 그는 의무 주체를 의무로부터 “해제할” 권한도 가질 것이라 지적한다. 의무로 구속할 수 있는 자라면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무 부과자의 이 이중적 권한은 자기에 대한 의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자기에 대한 의무일 때에도 의무 부과자로서의 자기는 의무 주체로서의 자기에게 책무를 지울 수도, 해제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이중적 권한은 자기에 대한 의무의 경우에는 역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의무 부과자와 의무 주체가 동일한 나일 때, 나는 언제든지 내가 부과한 의무의 구속으로부터 나를 면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무는 의무 주체가 원치 않더라도 해야만 한다는 강제성을 동반해야 한다. 원하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의무는 의무가 아니다.¹⁶ 따라서 자기에 대한 의무는 강제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의무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이 논증에서 칸트가 논의상 대변하는 반론자의 근거와 그에 대한 칸트의 반박 근거는 구분되어야 한다. 칸트는 이 반론자 측을 “사람들”이라고 서술함으로써, 이것이 자신의 근거는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무 부과자가 의무를 부과하고 해제할 이중적 권한이 있다는 생각은 칸트가 옹호하는 근거가 아니라 반론자의 근거이다.

다음으로, 저 면제 반론을 반박하는 칸트의 근거는 나를 구분하는 것이

— www.kci.go.kr

16 의무가 갖는 강제성의 성격에 관해서는 『정초』 IV 412-3을 참조하라.

다. “자연존재자로서의 인간”인 나와 “내적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자로서”의 인간인 나를 구분한다면, 즉 현상적 존재로서의 자기와 예지적 존재로서의 자기를 나누면 “외견상의 이율배반”은 해결된다는 것이다.¹⁷ 자기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나는 예지적인 나이고 자기에 대한 의무를 지는 나는 현상적인 나이므로, 예지적인 내가 현상적인 나에게 부과한 의무는 현상적인 내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칸트의 이 대답이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의문점을 추가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불충분하다고 본다.¹⁸ 첫째, 예지적인 나의 경우를 보자. 예지적인 내가 입법자로서의 나라고 한다면, 입법자로서의 나는 의무 부과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예지적인 내가 입법자라면, 이 나는 이성적 행위자 일반의 의지를 대리하는 자로서의 나일 것이다. 그런데 입법자로서의 나는 단지 자기에 대한 의무만이 아니라 모든 의무를 입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므로, 입법자로서의 나는 타인에 대한 의무도 입법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타인에 대한 의무와의 구분에 있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타인에 대한 의무의 부과자도 입법자로서의 나일 것인데, 이는 타인에 대한 의무도 자기에 대한 의무가 된다는 귀결을 가져온다. 예지적인 내가 입법자라면 자기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 구분이 형해화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둘째, 의무를 지는, 행위 주체인 내가 현상적 존재라는 칸트의 대답도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현상적 존재로서의 나는 감성적 존재일 것이다. 그런데 감성적 존재로서의 나는 자유롭지 않을 것이고, 자유롭지 않은 존재는

17 문제의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무릇 이성적 자연존재자로서 인간은 원인으로서는 그의 이성에 의해 감성세계에서 행위하도록 규정될 수 있다. 이때 책무성의 개념은 아직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인간이 그의 인격성의 면에서, 다시 말해 내적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자로서 생각되면, 의무를 질 수 있는 존재자, 그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 의무를 질 수 있는 존재자가 관찰된다.”(MS, VI418)

18 자기를 둘로 구분하는 칸트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5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이 장에서는 칸트 대답의 불충분성을 지적하는 정도로만 간단히 논의한다.

의무의 당위에 얽매일 수 없을 것이므로, 현상적 존재로서의 자기가 어떻게 책무의 강제성에 묶일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¹⁹ 결국, 칸트가 반론자를 대신해 제기한 면제 반론에 대한 칸트 자신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 자기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 대응은 오히려 의문을 추가한다.

그러나 나는 면제 반론을 주장하는 측이 반박의 근거로 제시한 것도 그에 못지않게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면제 반론이 기반한 전제들이 미심쩍을 뿐만 아니라, 그 전제들을 증명할 부담을 면제 반론을 제기하는 측이 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면제 반론을 주장하는 측이 지적하는, 자기에 대한 의무에 있어서의 자기 모순은 의무 부과자가 갖는 일반적인 의무 해제 권한을 자기에 대한 의무의 경우에 적용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칸트 자신의 대응에 대해서는 5장에서 더 진행할 것이다.

면제 반론자들이 제기하는 근거는 자기에 대한 의무 개념의 자기모순성을 밝히기에 충분치 않아 보인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한데, 첫째로, 면제 반론에서는 의무 부과자가 의무 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해제하는 권한이 의무 부과자 개인의 자의적인 권한이라고 전제된다. 그러나 의무의 부과나 해제가 의무 부과자의 원함이나 자의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생각은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것은 아닌데, 의무의 부과가 부과자의 자의와 독립적인,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면제 반론에서는 의무 부과자와 의무 주체가 동일인이라는 것이 의무의 자의적 해제 가능성을 함축한다고 전제된다. 그러나 의무 부과자와 의무 주체는 지위에서 서로 구별될 가능성, 두 지위를 동일인이 점하더라도 한 지위에서의 결정이 다른 지위에서의 결정과 독립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 이 반론은 팀머만이 제기하였다. Timmermann (2013), "Duties to Oneself as Such (TL 6: 417-420)", *Kant's "Tugendlehre": A Comprehensive Commentary* (Ed. by Andreas Trampota, Oliver Sensen & Jens Timmermann), Boston: De Gruyter, pp. 207-220, 특히 p. 216을 참조하라.

이제, 면제 반론의 두 번째 버전을 살펴보자. 마커스 싱어가 제기한 면제 반론은 의무-권리의 개념을 가지고 자기 개념의 불가능성을 논증한다. 싱어의 논증은 아래와 같다.

내가 지금껏 제시한 자기-고려적 의무들이 있다는 생각에 반하는 논증은 다음 세 명제에 본질적으로 의거한다: (1) 만약 A가 B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면, B는 A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만약 B가 A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면, 그는 이를 포기하고 A를 책무에서 면제시킬 수 있다; (3) 아무도 자기를 책무로부터 면제시킬 수 없다.²⁰

인용에 따르면, A가 B에 대한 의무를 갖는 경우 B는 A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 이때 B가 A에 대해 갖는 권리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B는 A에게 책무를 요구할 수도 있고 A를 책무로부터 면제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구조는 A와 B가 나라는 동일인인 경우에도 유지된다: 나(B)는 나(A)에게 책무를 요구할 수도 있고 나(A)를 책무로부터 면제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를 책무로부터 면제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3)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누구도 자기를 책무로부터 면제시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싱어는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이는 칸트가 밝힌 이유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의무는 (의무 주체가) 하기 싫더라도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동반하는데, 나는 나를 언제나 책무로부터 면제시킬 수 있고, 강제성을 결여하는 책무는 의무로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논증에 따라 싱어는 자기에 대한 의무는 의무로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싱어의 논증은 의무-권리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칸트의 논증과 유사한데, 둘 다 자기에 대한 의무가 의무의 책무성, 강제성 요건을 위

— www.kci.go.kr

20 Singer (1959), p. 203.

반한다고 본다. 그래서 싱어의 면제 반론에 대해서도 앞서 제기한 것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면제할 권리를 갖는 의무 부과자(B)의 권리는 그의 자의적 권한이 아닐 수 있다. 저 권리의 행사를 위해 객관적인 조건이나 제약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의무 부과자와 의무 주체가 (나라는) 동일인이라는 것에서 의무 주체는 언제나 의무 부과자가 부과한 의무를 해제할 수 있음이 함축되지 않는데, 나의 한 지위에서의 결정이 다른 지위에서의 결정과 독립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먼저, 나는 면제 반론이 자기에 대한 의무 개념에 대해 제기하는 자기 모순성의 핵심은 자기에 대한 의무의 경우에는 의무의 강제성이 성립하지 않음에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나는 이러한 반론이 기반한 전제가 의심스럽다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제 문제의 전제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해보자.

4.2. 면제 반론의 검토

면제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은 내가 나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책무를 부과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의무 부과자의 자의가 책무를 언제든지 해제시킬 수 있으므로 자기에 대한 의무에서 강제성은 성립되지 않는데, 강제성 없는 의무는 의무가 아니므로 자기에 대한 의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면제 반론에 대해 두 가지 반론을 제기하였다. 차례로 검토해보자.

첫 번째 반론은 의무의 해제가 의무 부과자의 자의와 독립된 어떠한 객관적 근거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의무 부과자의 의무 해제가 객관적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가능하다면, 의무 부과자의 책무 해제는 자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이 객관적 근거일 수 있을까? 5장에서 나는 인간성이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장

에서는 의무 부과자가 의무를 자의적으로 부과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면제 반론의 전제 자체를 검토하고 싶다.

과연 의무의 부과/해제는 의무 부과자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가? 나는 그러한 생각이 일반적으로 동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는 타인에 대한 의무의 경우에 더 잘 드러난다. 타인을 존중할 의무를 예로 들어보자. 의무 구조에 맞춰서 보면, 타인은 나에게 존중의 의무를 부과하고 나는 그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 이때 타인은 의무 부과자이고 나는 의무 주체이다. P라는 사람이 나에게 인격을 무시받기를 바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나는 P에게 인간으로서 존경해야 한다는 빚을 지고 있으나, P는 그러한 의무의 수행을 원치 않으며 내가 P에게 빚진 존경의 의무를 해제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 이는 의무 부과자가 의무 주체에게 부과한 의무를 자의적으로 해제하였다고 말할 만한 경우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무 주체인 내가 P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노예로서 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²¹ 오히려 나의 P를 존중할 의무는 포기되거나 해제될 수 없는, P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립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상식적이다. 이러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의무의 부과/해제가 의무 부과자의 자의와는 독립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²² 이러한 경

21 칸트는 『정초』에서 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존중할 의무가 예외 없이, “항상” 지워진다고 하는데(『정초』 IV429), 이는 상대가 자신의 인간성을 무시하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성립되는 의무임을 보여준다. 또한 『윤리형이상학』에서도 칸트는 존중받을 의무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도덕적인 존재자로서의 인간에 대한 존경의 표시는 타인들이 그에 대해 갖는 의무이자, 그가 그 요구주장을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MS, VI464). 그리고 나는 이러한 생각이 단지 칸트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을 존중할 의무는 칸트의 실천철학에서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22 이 사례를 두고 혹자는 이 사례는 타인에 대한 의무의 경우이며, 자기에 대한 의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반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칸트와 싱어의 반박 논증은 **일반적으로** 의무 부과자가 의무를 부과/해제할 권한을 갖는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성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앞서 인용한 싱어의 두 번째 전제, “만약 B가 A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면, 그는 이를 포기하고 A를 책무에서 면제시킬 수

우를 고려할 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해제할 권한이 전적으로 의무 부과자의 자의에 달려있다는 생각은 당연하게 전제할 만한 게 아니며, 면제 반론의 옹호자들은 이를 증명할 부담을 진다.

두 번째 반론은, 의무 주체와 의무 부과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무 부과자의 의무의 부과/해제 결정이 의무 주체의 의사와는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무 주체로서의 P가 의무를 해제하길 원하더라도 의무 부과자로서의 P는 그 원함과는 독립적으로 의무의 부과/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직관적 사례로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일을 반드시 하겠다고 결심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해 반론자는 애초에 이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의무의 위반도 없었다고 볼 것이다. 반면, 자기에 대한 의무의 옹호자는 특별한 사유나 정당한 절차 없이 약속을 어긴 것은 의무의 위반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점을 보다 구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유비 사례를 고려해보자. 소위 무감독 시험 상황에서 철수가 시험 감독관이면서 시험 응시자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자. 일반적으로 감독관은 응시자에게 부정행위를 범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며, 응시자는 부정행위를 범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즉, 응시자로서 철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감독관인 철수에게 빚지고 있다. 이때 철수가 두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다고 해서 감독관으로서의 철수가 응시자로서의 철수에게 부과한 의무를 자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시험 감독관의 권한은 그 역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시험 감독관은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감시할 권한은 갖되 그 의무를 임의로 해제할 권한은 갖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철수가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그는 자신에게 지워진 의무를 **정당하게** 해제하여 자신을 의무에서 면

있다”가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나는 비록 칸트도 자신의 반박 논증에서 이와 비슷한 전제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칸트 자신이 이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보지는 않는다.

제시킨 게 아니라 **부당하게** 위반한 게 될 것이다.^{23,24}

이 유비 사례는 의무 부과자와 의무 주체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무의 해제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특히 의무 부과자와 주체의 역할이 구분된다면, 그리고 의무 부과자의 역할이 어떠한 내재적 규범성을 갖는다면, 그 해제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껏 나는 면제 반론에 대해 두 가지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 반론의 목표는 면제 반론의 전제들이 충분히 정당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증명의 부담을 면제 반론을 제기하는 측에 넘기는 데에 있다. 즉, 의무의 성립이 계약 당사자들의 관계에, 특히 의무를 부과하는 쪽의 자의에 온전히 달려있다는 전제, 그리고 의무 부과자와 의무 주체가 동일인일 때 의무 주체가 의무 부과자의 결정을 전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입증할 책임이 반론자에게 있음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추가하지 않은 면제 반론은 자기에 대한 의무에 자기-모순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지만 자기에 대한 의무를 옹호하는 측에서도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의무의 성립이 의무 부과자의 자의와는 독립적인 근거를 가질 가능성, 그리고 의무 부과자와 의무 주체가 동일인일지라도 두 지위, 역할이 갖는 내재적 규범성에 의해 의무의 부과/해제가 결정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 가능성은 후기의 칸트가 **의무 부과자** 및 **의무 주체**라는 의무 성립의

23 이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의 문제이다. 감독관으로서의 철수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해제할 수 있는가는 그가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이지, 해제할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24 한 심사위원은 문제의 무감독 시험 사례가 제도적인 외부 규범이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논의에서 제도의 존재 여부는 관건이 아니라고 본다. 또, 무감독 시험 사례가 자기에 대한 의무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례로써 내가 확보하려는 점은, 의무 부과자와 의무 주체가 수적으로 동일할 사람일 때 의무 부과자가 의무 주체의 의무를 자의적으로 해제할 권한을 갖는다는 전제가 당연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구조적이면서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두 축을 제시하는 논의를 통해 비로소 열린 것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논의는 『정초』의 의무 논의에 대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5장에서 나는 저 두 가능성이 칸트의 후기 실천철학에서 어떻게 제기되고 전개되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칸트의 다른 이론들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

5. 의무 부과자로서의 자기

5.1. 의무 부과자의 조건들

『윤리형이상학』에서 칸트는 의무(책무) 부과자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순전한 이성에 의해 판단하면, 인간은 통상 순전히 인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또는 타인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주체에 대한 의무는 그 주체의 의지에 의한 도덕적 강요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강요하는 (의무지우는) 주체는 첫째로 하나의 인격이어야 하고, 둘째로 경험의 대상으로 주어져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이 인격의 의지의 목적을 지향하여 노력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일은 오직 두 실존하는 존재자의 상호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MS, VI442, 강조는 필자)

여기서 칸트는 『정초』의 의무 논의를 중요한 점에서 수정 혹은 보충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지는 모든 의무는 ‘-에 대한 의무’로, 한 인간이 어떤 인간에 대해 지는 의무이다. 즉, 모든 의무는 한 의무 부과자가 자신의 의지로서 어떤 의무 주체에게 강요하는 것이다(“의지에 의한 도덕적 강요”).²⁵

이때 의무 부과자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그는 의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인간과 경험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존하는 존재자”여야 한다 — 여기서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자. 요컨대, 의무 부과자는 자기 목적을 가질 수 있고 경험에서 상호작용하는 (다른) 인간에게 자기 목적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지는 모든 의무는 그러한 의무 부과자가 지는 의무이다.

이 심화된 의무 논의에서 두 가지 점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의무는 한 사람이 특정 개인에게 빚을 진다는 이인칭의 구조를 갖는다.²⁶ 이 구조는 의무의 관계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전 논의에서는 거의 주목되지 않던 것이다. 의무 주체가 의무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일인칭적인 일이 아니라, 경험에서 실존하는 구체적 개인인 의무 부과자가 자신의 의지로써 의무 주체에게 부과한 의무를 지는 일이라는 것이다.²⁷

다음으로, 저 의무 부과자의 요건이 『정초』의 인간성 논의에서 서술된

-
- 25 인용에서 분명히 드러나진 않지만, 의무를 지는 측(의무 주체)도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도 상대가 부과한 의무를 알아차리고 그 의무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즉 목적을 세우는 존재여야 한다. 의지가 없는 존재는 의무를 질 수 없기 때문이다.
- 26 이는 다월과 스코필드의 표현을 빌려온 것이다. 스코필드는 도덕적 이유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인칭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Schofield (2015), “On the existence of duties to the self (and their significance for moral philosophy)”,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90(3), pp. 505–528, 특히 p. 511을 참조하라.
- 27 의무 부과의 이인칭성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 이것은 스코필드의 사례를 빌려온 것이다. 내가 옆 사람의 발을 밟았을 경우, 나는 즉시 발을 치우고 그에게 사과해야 할 책무를 진다. 그런데 내가 세계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면, 발을 치우는 나의 행위는 잘못된 이유에서 이뤄진 것이다. 나는 다름 아니라 내가 발을 밟은 그 사람에게 의무를 빚지고 있고, 바로 그 사람만이 나에게 사과할 책무를 부과한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인간성이 아니라, 내 앞의 특정한 (인간성을 갖는) 사람에게 빚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인간성 해석은 이 개별 의지를 갖는 개별 인간이라는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Schofield (2015), pp. 511–512.

바와 통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기 의지로써 자기나 타인에게 자기 목적을 강제한다는 의무 부과자의 요건은 『정초』의 목적 자체로서의 인간에 관한 기술, 즉 자기 목적을 세울 수 있고 경험에서 다른 이성적 존재(즉, 인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설명을 상기시킨다. 『정초』에서 칸트는 인간이 스스로 목적을 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목적 자체로 여길 수밖에 없고, 그 같은 근거에서 다른 인간도 목적 자체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²⁸ 목적 자체로서의 인간, 그리고 의무 부과자로서의 인간은 마찬가지로 자기 목적을 갖는 다른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이성적 존재로서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이다.²⁹

이상의 인간성 논의는 내가 앞서 제기한 첫 번째 의문에 대답을 줄 수 있다. 의무를 부과할 근거로서 의무 부과자의 자의가 아닌 **객관적** 근거를 갖는다고 할 때, **인간성**이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한 인간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는 것은 그의 인간성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인간은 타인이거나 자기 자신이므로, 모든 의무는 자기에 대한 의무이거나 타인에 대한 의무이다. 이상의 논의는 자기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를 중요한 점에서 보충해준다. 우리는 타인의 인간성 및 자기의 인간성에 대해 의무를 갖는다. 자기에 대한 의무는 **자신의 인간성에 대해** 자기가 지는 의무이며, 타인에 대한 의무는 **타인의 인간성에 대해** 자기가 지는 의무이다.

그리고 이는 의무의 부과 및 해제를 정당화하는 객관적 근거가 인간성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어떤 의무의 해제는 그 의무 부과자의 인간성을 존

28 『정초』 IV428-9.

29 이는 자기에 대한 의무가 타인에 대한 의무보다 결코 덜 우선하는 의무가 아닌 이유를 알려준다. 정언명령에 따르면 우리에게서 자기나 타인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달리 말해, 의무 주체로서의 나는 자기 및 타인의 인간성을 해치지 말아야 할 완전한 의무, 그리고 자기 및 타인의 인간성을 증진시켜야 할 불완전한 의무를 진다. 자기에 대한 의무가 타인에 대한 의무만큼이나 중요한 이유는 나의 인간성이 타인의 인간성만큼이나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의 인간성은 타인의 인간성만큼이나 책무의 원천이다.

중하는 것이라면 정당화되지만, 그 의무 부과자의 인간성을 해치는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³⁰ 그렇지만 인간성은 의무 부과자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다. 모든 인간은 인간성을 갖지만, 개별 상황의 개별 인간만이 나에게 의무를 부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성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개별 상황에서 개별 의무 부과자와 개별 의무 주체가 맺는 관계 및 의무의 성격에 대해 더 알려주지는 않는다.

이상의 의무 성립의 구조 및 인간성의 역할 논의는 『정초』 이후 칸트의 의무에 관한 심화된 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나, 자기에 대한 의무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기에 대한 의무의 경우 나는 내 인간성에 근거해서 개별 상황에서 나에게 의무를 부과할 것이다. 이때 의무 부과자로서의 나와 의무 주체로서의 나는 지위로써 구분되며, 두 지위의 권한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이한 지위의 두 자기는 정확히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이 물음에 예지자로서의 나와 현상적인 나라는 지위 구분으로써 답하려는 시도가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장에서 나는 의무 부과자의 지위를 설명하려는 두 가지 시도를 검토 하겠다.

5.2. 의무 부과자로서의 자기

의무 부과자로서의 나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해 보인다. 하나는 입법자로서의 나가 의무 부과자라는 것

30 같은 논지에서 드니스는 자기에 대한 의무가 정언명령 중 소위 인간성 정식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 안의 인간성을 우리가 서로를 책무 아래에 놓을 수 있는 속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윤리적 의무가 있다면, 나는 이성에 따라 목적을 세우고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당신에게 의무를 가진 것이다.” Denis (1997), “Kant’s ethics and duties to oneself”,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78(4), pp. 321-348, 특히 p. 334를 참조하라.

이었다. 이 대답은 주로 『윤리형이상학』에서 칸트가 내놓은 의지와 의사의 구분을 참조한다. 다른 하나는, 의무 부과자와 의무 주체의 구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율성 태제의 수사적 표현의 하나로 보자는 것이다.

먼저, 입법자 해석은 칸트 자신이 내놓은 것이다. 칸트는 우리의 입법 이성(Wille)은 법칙을 입법하고, 우리의 선택 능력(Willkür)은 그 법칙에 따른다고 주장한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 관점에서 보는데, 한편으로 “순전히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자”로서 자신을 입법하는 존재라고 보며, 다른 편으로 “감성적으로 영향받는 존재자”로서 자신을 의무에 제약되는 존재라고 본다.³¹ 그런데 입법자로서의 나는 의무 주체, 즉 특수한 욕구나 경향성을 갖는 존재로서의 내가 세우는 개별적인 목표들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입법자로서의 나는 순전히 이성에 따르는 존재로서 순수 의지의 보편성을 담지하기 때문이다. 의무 부과자로서의 나는 순수 이성에 따라 보편적으로 입법한다. 그래서 의무 부과자로서 내가 부과한 의무를 의무 주체로서의 내가 자의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의 입법자 해석에는 두 가지 난점이 있다. 첫째, 이 해석은 모든 의무를 자기에 대한 의무로 만들 위험이 있다. 입법자는 자기에 대한 의무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의무도 입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타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 부과자도 입법자로서의 나임을 함축하며, 그렇게 되면 모든 의무는 입법자로서의 내가 부과하는 것, 즉 자기에 대한 의무가 되므로 자기에 대한/타인에 대한 의무라는 구별이 무의미해질 것이다.³² 둘

31 입법자 해석을 지지하는 드니스에 따르면, 자기에 대한 의무의 경우 나는 입법자로서의 나 자신에 의해 책무를 부과받는다.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의 법칙을 주는 이성에 의해 책무지워지는데, 그의 명령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다른 편으로, 우리의 자기-고려적 의무는 자기 인간성에의 책무를 반영하므로, 그 존재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개별 욕구나 목표에 의존하지 않는다” Denis (1997), p. 335.

32 또, 자기에 대한 의무의 부과자는 자기이고 타인에 대한 의무의 부과자는 입법자로서의 타인이라고 놓더라도 문제가 생긴다. 이는 타인이 나에게 입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자율성 논제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째, 이 해석은 칸트가 내건 의무 부과자의 요건에 어긋난다. 앞서 보았듯이 칸트는 의무 부과자가 경험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개별자라고 말하는데, 입법자로서의 나는 순전히 이성적인 존재자로서 그러한 개별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³³

다음으로 자율성 해석을 보자. 몇몇 학자들은 칸트의 자기에 대한 의무 논의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율성 테제의 다른 표현으로 보자고 제안한다. 그런데 칸트의 자율성 테제에 따르면 나는 오직 내가 세운 법칙에 따라서만 행위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행위자는 나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수 없으며, 오직 내가 그의 규칙, 목적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그것은 나의 규칙, 목적이 될 수 있다. 팀머만은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나 외의 도덕적 행위자는 나 자신의 자율적인 이성 능력을 거쳐서(via) 타인으로 향한다. 우리의 이성 능력은 우리와 같은 이성적 존재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도록 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존재자는 우리와 같이 목적 자체라는 특별한 도덕적 존엄성을 갖기 때문이다.”³⁴

자율성 해석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모든 의무는 내가 나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는 칸트의 자율성 논제에 의존하여 자기에 대한 의무와 타인의 대한 의무의 구분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자기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가 구분되는 것은 구조적 차이이기보다는 해당 의무에서 누구의 인간성이 존중받아야 하는가에 따른, 즉 의무 대상이 자기

33 이 부분은 리스가 강조하는 것이다. “의무는 표준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개인들에 대한 것이다.”, “표준적인 의무들은 구체적 개인에 대한 것이라는 점은 칸트 도덕 이론의 기본 특징으로서…….” 입법자로서의 나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 의지의 대리자로서의 나이다. 이러한 구분에서 출발하여 리스는 의무의 원천과 입법을 구분하자고 주장한다. 의무의 입법자는 특정 개인이 아닌 집단적 의지이고 의무의 원천인 의무 부과자는 특정 개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Reath (2002), “Self-Legislation and Duties to Oneself”, *Kant’s Metaphysics of Morals: Interpretative Essays* (Ed. by Mark Timm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특히 p. 362를 참조하라.

34 Timmermann (2006), “Kantian duties to the self, explained and defended”, *Philosophy* 81(3), pp. 505-530, 특히 p. 513을 참조하라.

인지 타인인지에 따른 구분에 불과하다. 요컨대, 타인에 대한 의무는 타인 인간성과 관련된 의무이고 자기에 대한 의무는 자기 인간성과 관련된 의무일 뿐인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³⁵ 같은 맥락에서 탐머만은 자기에 대한 의무를 얇은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나누자고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나의 모든 의무는 나의 이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의무는 ('얇은' 의미에서) 자기에 대한 의무이고, 타인에 대한 의무와 상대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실질적 의미에서) 자기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³⁶

이 해석은 자기에 대한 의무와 자율성 테제 간의 긴장을 해소해준다는 이점을 갖지만 상당한 난점도 갖는다. 가장 큰 문제는 이 해석이 타인에 대한 의무에 있어 타인의 의무 부과자 지위를 사실상 부정한다는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른다면 타인은 의무의 독립적인 원천일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의무 부과자의 지위를 갖지 않을 것인데, 이는 앞서 우리가 논의한 『윤리형이상학』의 의무부과자 논의 전체를 무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타인은 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독립적 원천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부과한 의무에서 고려되어야 할 의무 대상에 불과한 존재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칸트의 자기에 대한 의무 논의는 의무 성립에 있어 의무 부과자 지위와 자율성 논제가 상충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난점을 갖는다. 칸트의 의무 부과자-의무 주체 구도는 의무의 성립을 관계적 구조로써 보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매력을 갖는다. 그러나 자율성으로서의 도덕이라는 칸트 실천철학의 핵심적 논제, 모든 의무는 “나 자신의 자율적인

35 센젠은 이러한 입장을 가장 강하게 취한다. “어떠한 의무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 이성의 법칙에 의해 속박된다는 것이다. 그 의무가 내용상으로 자기를 향하는 타인을 향하든, 자기 이성에 의해 지시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자기에 대한 의무 — 자기 이성의 법칙 따르기 — 는 어떠한 타인에 대한 의무보다도 우선하고 더 중요하다.” Sensen (2017), “Duties to Oneself”, *The Palgrave Kant Handbook* (Ed. by Matthew C. Altman), London: Palgrave Macmillan, pp. 285-306, 특히 p. 293을 참조하라.

36 Timmermann (2013), p. 213.

이성 능력을 거쳐서³⁷ 자기-입법된다는 입장은 후기의 칸트가 확립하고자 했던 의무 성립의 관계적 구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기에 대한 의무는 면제 반론자들의 주장대로 자기 모순인 것은 아니지만, 자율성 논제와의 정합적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숙제를 남긴다.

6. 결론

본 논문에서 나는 자기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자기 모순적이라는 소위 면제 반론을 중심으로 자기에 대한 의무의 성립 가능성을 논하였다. 우선 자기에 대한 의무 개념의 도덕적 성격을 분명하게 하였고, 다음으로 이 개념의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반박하는 면제 반론이 반박으로서 불충분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에 대한 의무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진정한 어려움은 의무 부과자 지위의 불분명성 및 자율성 테제와의 부조화에 있음을 밝혔다.

자기에 대한 의무는 도덕적 의무를 계약으로 보는 계약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낯선 개념일 수 있지만,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호소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충분히 흥미로운 개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흥미를 넘어서 자기에 대한 의무는 칸트 실천철학에서 의무 성립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오직 개별 상황의 개별 인간이 의무 부과자가 될 수 있다는 칸트의 주장은 칸트 실천철학 내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이에 더해, 인간만이 의무 부과자라는 생각은 현대의 동물 윤리에도 장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의문점을 남긴다.

37 Timmermann (2006), p. 513.

참고문헌

- 존 스튜어트 밀(2018), 박문재 역, 『자유론』, 서울: 현대지성.
- Denis, Lara (1997), “Kant’s Ethics and Duties to Oneself”,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78(4), pp. 321–348.
- Kant, Immanuel (1990), *Metaphysische Anfangsgünde der Tugendlehre*, Felix Meiner Verlag: Hamburg [임마누엘 칸트(2012),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서울: 아카넷].
- Kant, Immanuel (2016),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Hamburg: Felix Meiner Verlag [임마누엘 칸트(2005),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정초』, 서울: 아카넷].
- Osawa, Toshiro (2018), “General Conception of Duties Towards Oneself in Baumgarten and Kant”, *Natur und Freiheit: Akten des XII. Internationalen Kant-Kongresses* (Ed. by Violetta L. Waibel, Margit Ruffing and David Wagner), De Gruyter, pp. 2013–2020.
- Reath, Andrews (2002), “Self-Legislation and Duties to Oneself”, *Kant’s Metaphysics of Morals: Interpretative Essays* (Ed. by Mark Timm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chofield, Paul (2015), “On the existence of duties to the self (and their significance for moral philosophy)”,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90(3), pp. 505–528.
- Sensen, Oliver (2017), “Duties to Oneself”, *The Palgrave Kant Handbook* (Ed. by Matthew C. Altman), London: Palgrave Macmillan, pp. 285–306.
- Singer, Marcus G. (1959), “On duties to oneself”, *Ethics* 69(3), pp. 202–205.
- Timmermann, Jens (2006), “Kantian duties to the self, explained and defended”, *Philosophy* 81(3), pp. 505–530.
- Timmermann, Jens (2013), “Duties to Oneself as Such (TL 6: 417–420)”, *Kant’s “Tugendlehre”: A Comprehensive Commentary* (Ed. by Andreas Trampota, Oliver Sensen & Jens Timmermann), Boston: De Gruyter, pp. 207–220.
- Williams, Bernard (1985), *Ethics and the Limits of Philosophy*, London: Routledge.

원고 접수일: 2025년 10월 13일, 심사완료일: 2025년 11월 6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1월 11일

ABSTRACT

On the Possibility of Duties to Oneself

Kang, Euna*

‘Release Objection’ in Kant’s *Metaphysics of Morals*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the concept of duty to oneself, focusing on the “release objection.” First, it clarifies that the debate on duties to oneself is limited to non-derivative moral duties. It then argues that the release objection—which claims that the concept of duties to oneself is self-contradictory—fails as a refutation of the possibility of such duties, because its key premise, namely that the self cannot bind itself, is not justified. However, the paper points out that the release objection raises a deeper problem for Kant’s account of the possibility of duty. Kant’s strategy of securing a place for duties to oneself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self as the imposer of duty and the self as the subject of duty incurs the burden of clarifying the status of the former as well as the burden of explaining the theoretical tension with the doctrine of autonomy. Ultimately, by examining the problems raised by the release objection within Kant’s account of the possibility of duty, this paper aims to show that the concept of duty to oneself does not fall into a logical contradiction, but rather it calls for a more fundamental reflection on the very conditions under which duties are possible.

* Lecturer, School of Liberal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Duty, Duties to Oneself, Release Objection, Autonomy, Imposer of Duty, Subject of Duty